

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5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4년 10월 30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현재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6개 외국인근로자센터 중 유일하게 자치구에서 직영하며 재정상·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를 서울시로 이관하고
- 나. 해당 운영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 개요

- 시설명 : 서울특별시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무학로 6길 47-1
- 시설규모 : 453.7 m^2 (지하1층, 지상4층)
- 운영인력 : 5명 내외
- 공간구성 : 사무실, 강의실, 커뮤니티 공간 등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1년 10월(2015. 3. 1 ~ 2016. 12. 31)

- 위탁사무 :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운영 및 사업 일체
 - 외국인근로자 노무, 고충 등 상담지원
 -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한국어, 컴퓨터, 직업기술 등 교육 프로그램 운영
 -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및 문화체험·교류 지원
 - 기타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참여지원 및 유관기관·단체와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
- 소요예산 : 409,000천원 (2015년도 예산편성 요구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

-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
-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0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라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노무상담·교육·취업지원 등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
- 이를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1조

제21조(민간과의 협력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정책에 관한 사업 중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, 그 위탁한 사업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18조제1항 및 제20조

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)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(이하 "지원 시설"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
제20조(업무의 위탁)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15년도 예산편성 요구

다. 합 의 : 현 운영주체인 성동구와 센터 이관 합의 완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 이동진(☎ 5078)